

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1147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2. 9 고 성 군 수
나. 회부일자 : 2009. 2. 10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9. 2. 18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상위 법령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용 법명을 변경하고, 감면대상의 축소 및 명확화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,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(안 제2조,3조)
-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삭제 (안 제10조)
-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동일 수준으로 감면 (안 제11조)
-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(안 제12조의2)
-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21조)
-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 정비 (안 제28조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8-666호(2008.11.5.~ 2008.11.25.)
- 의견제출사항 : 없음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지방세법 제9조, 2009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(행정안전부)
- 경상남도 세정과-3316(2008. 09. 26.), 세정과-3729(2008.10.07.), 3920(2008.10.13.)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용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로 인정하여 감면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,
 - 「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감면」 조문 내용 일부를 「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」 조문으로 분리 신설하고,
 -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도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처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여 지방세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,
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,
 - 「오지개발촉진법」이 폐지(2008. 3. 28)되면서 「농어촌정비법」 경과조치에 규정하고 있어, 「농어촌정비법」의 규정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하였으며,
 - 「정부조직법」의 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수정하고,
 - 개발제한구역과 취락지구지정대상 지역내에서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법률을 『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서 『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으로 수정하였으며,
 - 「향교재산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,
 - 창고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있어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감면조문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,
-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○ 2009. 2. 1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